
창원가정법원청사 신축 설계용역
설계공모 지침서



2021. 4.

법 원 행 정 처
기 획 조 정 실

차 례

1. 공모의 목적	1
2. 사업의 개요	1
3. 공모 요강	2
4. 설계 지침	10

1. 공모의 목적

설계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설계안(공모지침에 충실하면서도 청사의 외관은 부지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법원의 정형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친근감을 갖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의 확보와 설계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사업의 개요

가. 건물의 명칭

창원가정법원청사

나. 신축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산26-5 일원

다. 대지 현황

- 1) 면 적 : 10,455m²
- 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라. 건축 규모

연면적 : 8,250m² 이내
(연면적 초과시 경우 처리에 관하여는 뒤의 3. 공모요강 중 자.항 참조.)

마. 건립일정계획

- 1) 설계공모 : 2021. 04. ~ 2021. 06.
- 2) 기본설계 : 2021. 07. ~ 2021. 12.
- 3) 실시설계 : 2022. 01. ~ 2022. 09.
- 4) 공 사 : 2023. 01. ~ 2024. 12. (24개월)

바. 총 소요공사비

- 1) 기본 및 실시설계비 : 814,000,000원
- 2) 공사비 : 16,659,750,000원
- 3) 감리비 : 1,295,000,000원

3. 공모 요강

가. 공모 대상

창원가정법원청사

나. 공모 방법

일반설계공모

다. 응모 자격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 2) 공동이행방식 공동 응모 가능(단, 대표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함)

라. 응모 일정

- 1) 현장설명 및 응모등록 : 2021. 05. 10. (월) 14:00
- 2) 질의서 접수일 : 2021. 05. 17. (월) 09:00 ~ 17:00
- 3) 응모안 제출일 : 2021. 06. 18. (금) 14:00 ~ 17:00
- 4) 심사발표(예정) : 2021. 06. 말

마. 심사

1) 심사기준과 방법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2019.04.30.)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제20조 제④에서 정한 일반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하며,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에서 정함

2) 심사위원회 구성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에 따라 구성함

□ 심사위원

성 명	소 속	비 고
노 진 관	서울고등법원 상임전문 심리위원	건축사
김 민 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심 재 화	(주)영화키스톤건축사 사무소	
손 준 익	부산고등법원 상임전문 심리위원	건축사
원 정 연	고려대학교 교수	
이 강 준	한양대학교 교수	
김 동 진	경상대학교 교수	

□ 예비심사위원

성 명	소 속	비 고
이 규 일	삼육대학교 교수	
이 병 연	승실대학교 교수	

※ 심사위원이 제척·회피·기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

※ 참가자는 기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별지15)를 제출할 수 있음

3) 심사결과의 통지

당선자 및 입상자에 한하여 문서로 개별 통지함

4) 응모작품의 공개 등

당선 작품을 포함한 응모작품을 공개함

바. 참가 보수

1) 당선자

1점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함

2)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이하는

절사)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3) 기타 입상자 보상비 예산 : 20,000천원(VAT포함)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 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며 세금 포함임

4) 당선자가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당선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상작품 중에서 우리처의 심의로 1인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서 참가 보수비를 공제함

사. 공모절차

1) 현장설명 및 응모등록

가) 일 시 : 2021. 05. 10. (월) 14:00

나) 장 소 : 창원지방법원청사 1층

다) 참가자격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

라) 제출서류

- ① 응모등록증(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② 건축사 업무신고필증·대표건축사 자격증 사본(공동 응모일 경우 각각 제출) 각 1부
-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공동 응모일 경우 각각 제출) 각 1부
- ④ 대표건축사 신분증 사본(위임받은 건축사일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건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⑤ 공동 응모일 경우 : 공동응모협정서, 대표건축사 선임계, 공동참여자 명단(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각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에 날인

마)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며 공동 응모할 경우 현장설명 참가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2) 질의회신

가) 응모요강이나 공모지침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나) 질의서 접수일 : 2021. 05. 17. (월) 09:00 ~ 17:00

다) 연 락 처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술담당관실

주소 :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 02-3480-1967 / 전송(FAX) : 02-533-7292

라) 회 신

①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일괄 작성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에 게재

②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전송번호(FAX)를 반드시 기재

③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현상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실행순서는 대국민서비스/공고/계약입찰공고에서 검색할 지역 및 법원명에 '창원가정'을 입력 후 검색을 실행하여 다운 받을 것

3) 작품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06. 18. (금) 14:00 ~17:00

나) 제출장소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술담당관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청사 동관 543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다) 제출도서 : 현상설계 공모지침에 의함

아. 응모도서

1) 응모도서의 종류

가) 설계설명서 (설계설명서에 투시도 작성 금지, 스테디모형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가능)

나) 모형은 반드시 스테디 수준 모형

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 일체의 색채 및 음영 금지(흑색 단선으로 표현)
허용 예시 : (별지 3 참조)

불가 예시 : (별지 4 참조)

※ 전시용 도면 및 투시도(또는 조감도)는 작성 금지함

2) 제출부수

가) 설계설명서 : 30부(별도 박스 포장)

나) 면적검토용 CD : 2장(프리젠테이션용 자료 포함)

3) 응모도서의 작성요령

가) 설계설명서

① 크기 A3판 (420mm×297mm),

종이의 재질은 표지 : 백색아트지(150g/m², 무코팅)

내지 : 백상지(100g/m²)

② 좌철하여 제본할 것

③ 스테디 모형 사진(5매 이내)과 도면을 첨부할 것

④ 설계설명서는 백색용지에 흑색이나 회색으로 표현할 것

- 배치도(건축물, 도로, 주차장, 조경계획 등을 표기) 축척 : 1/500

- 평면도(각층) 축척 : 1/300

- 입면도(4면) 축척 : 1/300

- 단면도(종·횡) 축척 : 임의

- 동선구분(일반구역, 통제구역)을 위하여 평면도상의 복도 등 통로부분에 색칠을 할 수 있음 (단, 일반구역 AUTOCAD 색상번호 21번 고동색 계통, 통제구역 AUTOCAD 색상번호 41번 노란색 계통)

⑤ 다음 내용을 개조식으로 명기할 것

- 설계요지(간략하게)

- 면적표(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별면적표[구적도], 실별면적, 주차장면적, 주차대수, 녹지면적 등)
- 실별면적은 지침면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할 것
- 주요부분 내·외부 마감재료표
- 각종 설비계획 및 구조계획은 개념만을 간략하게 설명할 것
- 연면적 산출이 애매한 부분(필로티 등)은 연면적 산입 여부를 도면에 명쾌하게 나타낼 것
- 기타 도면에 표현하지 못한 사항의 설명

⑥ 총 매수는 25매(표지 및 간지, 기본도면을 모두 포함) 이내로 하고 매수번호를 중앙하단에 표기할 것

⑦ 편철 순서

- 표지, 스터디 모형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설계개요, 층별면적표(구적도), 실별면적표, 지침면적 대비표,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계통도 등 기타도면, 설계요지, 재료마감표, 각종 계획,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기타 등의 순으로 편철할 것
- 표지는 별도 양식에 의할 것(별지 1 참조)

나) 모형(인접도로 표현할 것, 일체의 칼라색상 및 흑색, 회색 사용을 금하고, 건축물 및 모든 것은 백색 이외에는 절대 불가)

① 재질

- 아크릴은 사용 금지하고, 스티로폴 및 우드락(Mass Model 수준으로 제작)만을 사용하며, 나무 및 잔디는 구형 스티로폴만 사용함(백색에 한하며, 흑색 및 회색 색상 불가), 이형재료(철사 등) 사용 금지

② 축척 : 1/300

③ 모형 규격 : A1판(841mm×594mm)을 초과할 수 없음

④ 모형 본체 바닥면에 응모확인서와 동일한 고유번호 *-***** 기입할 것(고유번호는 임의 기재)

⑤ 포장

- 모형의 바닥판은 압축 스티로폼로 하고, 제출 시 심사용 모형이 보이지 않도록 백색 우드락, 백색 하드보드지 등으로 뚜껑을 만들어 포장하되, 보관 및 운반 시 내용물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히 포장할 것

다) 면적검토용 CD (AUTOCAD버전은 2010에서 열수 있도록 저장)

- ① AUTOCAD로 작성된 각종 평면도에 외벽 중심선을 별도의 Layer(Area)에 폴리라인(실선, 색상번호 30번)으로 그려 CD에 저장
- ②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OPEN공간, PIT 등도 같은 Layer(Area)에 폴리라인(실선, 색상번호 30번)으로 표현

라) 설계설명자료(CD 저장 제출)

- ① 설계설명 자료는 별도의 발표 자료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된 설계설명서를 PPT(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한 파일을 활용하여 발표하여야 함(설계설명서 원본의 별도 편집 불허, 애니메이션 사용 불허)
- ② 응모업체 발표자가 자료를 설명하되,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은 불허함 [응모자의 프리젠테이션은 심사장 밖에 설치된 컴퓨터와 마이크를 통해 심사장 내로 전달된 설계설명서 PPT(파워포인트) 자료화면과 음성을 통해서만 진행 예정]
 - 응모업체 발표자는 업체 소속 임직원 2명으로서 공모안 제출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발표 당일 각각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사본 제출)
- ③ 설계설명(프리젠테이션)
 - 발표시간 : 작품 당 6분

4) 익명을 위한 조치

- 가) 응모자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작품에 대하여 익명으로 하여야 함
- 나) 응모자는 등록 시 확인봉투에 응모확인서를 넣고 봉하여야 함
- 다) 확인봉투는 응모도서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라) 설계설명서 표지는 별도 양식으로 작성함(별지 1 참조)
- 마) 확인봉투는 심사 종료 전에는 개봉하지 아니함
- 바) 응모도서는 설계사무소명, 대표자 성명, 주소, 암호, 문구 등을 기입하거나 응

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들을 기입한 첨부물을 끼워 넣어서는 아니 됨

5) 응모도서 제출

가) 응모도서는 파손되지 않게 포장하여야 함

나) 응모도서는 참가자 각 1점으로 한정함

다) 응모도서 제출 후 추가 또는 수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라)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함

마) 응모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작품은 접수하지 아니함

바) 응모자가 제출하여야 할 도서

- ① 응모확인 봉투(응모확인서 동봉)
- ② 설계설명서(투시도 금지, 스테디 모형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가능)
- ③ 모형(스테디 수준 모형)
- ④ 면적검토용 CD(프리젠테이션용 자료 포함)

자. 실격처리

1) 연면적을 초과하는 설계도서

2) 전시용 도면이나 투시도 제출한 자

3) 스테디 모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모형 재질, 색상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규정 위반 시

불가 예시 : (별지 4 참조)

5) 응모자가 이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특히 면적 허위기재 및 필요실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6) 응모도서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글씨, 문구를 표시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위 1) ~ 6)항의 경우 설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 때

차. 기타사항

1) 응모도서의 저작권은 설계자에 귀속함

단, 우리처의 필요에 의하여 무상으로 그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거나 일부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할 수 있음

2) 응모작품은 당처에 귀속됨

다만, 스터디 모형은 당선자 및 입상자를 제외하고, 응모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반환함

3) 우리 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당선작품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음

4)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우리 처에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5)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공모지침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7) 당선자는 계약시 관련 최신법령을 준수해야 함

4. 설계지침

가. 일반지침

1) 청사신축의 기본 원칙

① 가정법원의 이념 및 특징 고려

- 가정법원은 분쟁과 비행의 배후 원인을 찾아 가정 내 여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정상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장래를 위한 후견적 기능을 도모한다는 이념에 기초함
-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장애인, 고령자, 아동을 위한 청사 주출입구의 스크린 도어 설치 등 사회적 약자의 가정법원 시설 이용 보장과 지원,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교정 및 지원 등의 복지, 후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일반 법원과 다른 특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바, 물적 시설의 면에서도 법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드러움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야 함

② 가정법원 특수 공간(면접교섭센터 등)의 설치를 염두에 두어야 함

③ 가정법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장소로 다가갈 수 있도록 건축물 자체(조경 포함)가 이를 구현하고 있어야 함

-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청사 디자인, 배치와 마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음

④ 가사조사실, 면접교섭실 등의 공간은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의사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건물 내의 접수대 등 시설물이나 의자 등의 집기도 부드럽고 따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며, 내벽, 천정의 색상은 차분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들 수 있도록 함

2) 청사의 외관 및 성능

① 청사의 외관은 법원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

민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자연지형 및 주변환경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미학적 청사외형을 구현하여야 함

- ② 개방적인 보행동선을 구현하여 열린 법원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민원인의 이동 동선의 최소화 및 이용구역의 집중화를 통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를 추구하고야 함
- ③ 민원인의 민원동, 법정동에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민원인 출입구 및 주차장을 배치하고, 잉여공간에는 창원지역의 자연과 생활문화(주변역사, 문화시설, 자연환경, 녹지, 도로 등)를 고려한 녹지광장, 휴게공간 등 다양한 외부공간을 창의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을 찾는 국민들이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④ 로비와 법정 내부 공간은 사법의 존엄과 권위를 적절히 상징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청사 주출입구 등의 넓은 공간은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밝고 쾌적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함
- ⑤ 장래 증축(수직 1개 층 및 수평 증축)에 대비한 건축물이 되어야 함(수직 증축의 경우 건물 하중 고려, 수평 증축의 경우 건물 배치 고려)
- ⑥ 신축청사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함
 - 각종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하고,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적용은 예정부지의 제반여건과 건축물 구조형태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3) 방실배치의 원칙

가) 접근 가능성에 따른 공간 배치

- ① 청사를 접근 가능성에 따라, 다음 3개 구역으로 구분함
 -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일반구역**(민원 부서, 법정 등)
 - 사전 승낙 등 일정한 규제 하에서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통제구역**(판사실 등)

-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 및 보호가 필요한 **보안구역**(위탁소년 대기실 등)

- ② 위 3개 구역 간 이동 경로(동선)를 명확히 분리하고, 특히 보안 구역 이동 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민원인과 직원들의 상호 교차나 충돌로 인한 혼란이나 보안상의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나) 업무 성격에 따른 공간 배치

- ① 업무 성격에 따른 공간 배치는, 다음 4개 구역으로 구분함

- 소송 관계자나 민원인 등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민원 업무가 주로 처리되는 **민원업무 중심구역**(종합민원실, 민원관련부서, 기록열람·복사실, 민원상담안내실, 은행, 우체국 등)은 동선변경, 특히 층간 이동 없이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중심으로 청사 저층 전체에 배치하고, 기타 구역은 각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구역별로 집중적으로 근접 배치함. 특히 협의이혼사건 관련 제반시설(대기실, 상담실, 확인실 등)은 한 곳에 모아 서 저층에 배치하되 일반 민원인 이동 동선과 구분함
- 법관과 직원의 **업무 중심구역**(각 판사실, 가사과 등)
- **업무지원 중심구역**(총무과, 전산실, 회의실 등)
- **법정 중심구역**(법정 등)

- ② 공간구성은 위 4분된 구역별로 각 업무의 성격에 따라 건물의 수직구조에서 각 유관구역별로 구분하고, 각 구역간 이동경로를 구분하고 차폐시설을 하여 각 구역 이동 시 보안상의 문제를 고려함

- ③ 각 층간 수직 이동 구조에 있어서는 법관과 법원 직원의 통상 이동 경로, 법정 출입 경로, 일반인의 법정 출입 경로, 위탁소년의 법정 출입 경로로 4분하는 것을 기본 구도로 하여, 각각의 이동 경로에 근접한 지점에 필요한 방실과 출입문을 배치함

- ④ 사무용 방실은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를 고려함

4) 사무자동화에 대비

- ① 판사실, 사법보좌관실, 과사무실, 민원안내상담실, 도서실, 법정, 조정실 등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개인별 연결에 대비함(법정, 조정실의 판사석, 참여관석, 조사실 포함)

- ② 각 층간 수직선로의 여분을 확보함
- ③ 등기전산화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의 전원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전 시에 대비하여 청사규모와 사무용 전산장비 전력소비량을 보충하는 자가발전장치 또는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함

5) 도서실·서고(창고 포함) 및 전산기계실의 하중

- ① 도서실·각 과 서고(창고 포함) 및 전산기계실로 예상되는 부분의 바닥은 적재하중을 10KN/m²을 기준으로 설계하되, 확장 및 이동에 대비하여 주변 방실의 적재하중을 동일하게 함

6) 방실의 용도전환, 확장, 재배치에 대한 대비

- ① 장래 있을 수 있는 방실의 용도전환 및 확장, 재배치 등을 고려하여 내력벽 아닌 칸막이를 설치하되, 적재하중 부족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의 용이성을 고려함
- ②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방송 및 전산설비의 설치도 장래의 확장 등 사정변경에 최대한 대비함
- ③ 화물용 승강기(기록 및 전산장비 등 운반)를 설계상 고려함

7) 출입통로와 이동 편의

- ① 청사 출입 경로는 경비와 보안을 고려하여 최소화·단순화함
- ② 가정법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이나 소년비행 관계자들로서 이들의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함.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이 비공개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법정에서 출석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타인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독자의 출입구를 설치
- ③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

- ④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고려함

8) 보안 및 방재에 대한 고려

- ① 법원구성원과 시설에 대한 보안문제는
 - 통제구역, 보안구역 등 구역구분과 이동경로분리 등에 의한 건물구조로 해결을 도모하고,
 - 경비직원 등 소수의 인력배치로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 보안설비와 장치 등 기계설비에 의한 보안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함
- ② 방실배치, 출입구 설정 등에 있어서 위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③ 비상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건물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을 설치하고, 법정·보안구역 등의 등화유지와 경비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설비 등 동력공급을 구분하여 시설함
- ④ 법정, 법원장실, 판사실에서 보안관리대원실과 비상연락이 가능한 설비 설치
- ⑤ 화재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내화구조, 내장재의 불연화, 가연물량의 최소화, 대피로의 확보, 재해의 확산방지를 위한 구획 구분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⑥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통제구역, 보안구역은 계단 혹은 승강기 홀 등에서 복도로 진입 시 전자식 출입카드 또는 지문, 안면인식기의 사용이 가능한 선로 구성
- ⑦ CCTV, 비상벨, 출입통제설비 등 보안관련 설비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통합상황실(방호원실)을 설치 고려

9) 방음대비책

- ① 판사실, 법정, 조정실, 조사관실 등은 건물외부 또는 인접한 방실의 소음이 들어오거나, 방실내부의 진행상황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조치함(방음벽을 설치하고, 외부와의 사이에 완충공간을 두며, 법정에 창문을 두지 않는 등 다각적 방안 검토)

- ② 특히 회의실 등 공간이 넓은 방실은 음의 반향에 의한 간섭현상 발생 방지
- ③ 법정 등의 천정과 벽면, 바닥재 등은 음의 반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료 사용
- ④ 냉·난방용 장비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 등 설비관계 소음 방지에 유의함
- ⑤ 비상발전기 운전 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진동방지에 유의함

10) 전기 및 기계설비 등

① 공통 사항

- 각종 설비는 에너지절약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생애비용(life cycle cost)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함
-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 적합하도록 함),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적용은 예정부지의 제반여건과 건축물 구조형태,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 신축 건물의 통합제어(소방, 기계, 전기, 통신)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식을 채택함
- 기계실, 전기실, PIT공간 등 유지관리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함

② 전기 설비

- 전기·통신 인입에 대한 사항은 인입부위, 시설분담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서면을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함.
- LAN 케이블 공사 중 DATA 부분은 공배관까지만 통신공사(도급)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관 이외 설치는 별도공사(전산정보관리국)로 설계함

③ 기계 설비

- 일과시간 전후 또는 휴일사용을 위한 냉·난방의 부분적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법정, 조정실, 회의실, 당직실, 전산실은 일과시간 후의 업무진행이 가능하도록 냉·난방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당직실(숙직실), 중앙감시실 등은 24시간 냉·난방이 단절되지 않는 방식 채택함

- 적절한 공조와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고려함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에 대한 사항은 인입부위, 시설분담금 등 협의서면을 확인 함
- 가정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상담·심리평가실, 유아조사실, 위탁소년보호실, 면접교섭실 등 바닥 난방이 필요한 실은 설계에 반영함

11)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고려

- 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함(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 ② 특히 민원인이 출입하는 장소는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기울기, 턱 낮추기, 전용주차장, 점자블록, 이용에 편리한 계단구조 등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함
- ③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법정, 조정실의 당사자석·피고인석·증인석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
- ④ 또한, 1개 이상의 법정은 법관 통로에 경사로 등을 설치, 장애인인 법관이 계단 없이 편리하게 법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⑤ 각 과 사무실 등에 민원인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민원인(장애인 포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12) 경제적인 설계 고려

- ①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함
- ② 최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를 함

13) 외부인과 직원전용 주차공간의 격리

- ① 법원직원 전용 주차장과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분리함

- ② 민원인용 주차장은 총무과 분실과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함
- ③ 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자동차를 통제하는 통합된 차단기 등의 설비를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여 법원 민원 이외의 용도로 주차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함
- ④ 장애인용 주차장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청사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고, 안내데스크와 연결된 도움벨을 설치하도록 함
- ⑤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검토

14) 호송차량 공간확보

- ① 위탁소년의 호송차량 공간을 확보하고 대형버스 등이 출입 가능하도록 하고, 소년보호실(구치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함

15) 모성보호실 설치

- ①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휴게실(탈의실)을 확보하고, 수유실로 겸용 가능하도록 세면대를 설치함

16) 건물옥상에 정원 설치

- ① 쾌적한 녹지 구성을 통해 직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상정원 설치 고려
 - 산성비, 자외선 등에 의한 방수층과 벽면 열화현상 경감 및 냉·난방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② 방수, 배수, 급수, 하중 등 건물 옥상의 전체 구조를 검토하여 설계
- ③ 옥상 층 출입구에 출입통제설비 설치

17) 건물에너지효율 관련

- ①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신축 건물의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 면적을 50% 미만으로 제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

단스위치 설치 등) 설계에 반영함

18) 독신자 숙소 건립

- ① 신축청사와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 ② 신축청사와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기계/전기/소방)
- ③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사 출입경로와 별도의 동선계획 수립

나. 개별 시설의 규모와 설계 시 유의사항

1) 법원장실

- ① 남향 중간층으로 민원인의 소음이 적은 곳으로 하되, 판사실 및 사무과장실, 행사장(소회의실 겸용) 인근에 배치
- ② 99㎡의 범위 내에서 집무실(사실포함), 접견실을 적절히 배치함 [접견실은 집무실, 부속실과 연결되도록 하며 부속실과 소회의실(행사장 겸용)이 연결되도록 함]
- ③ 또한, 부속실로 통하는 문 이외에 복도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함
- ④ 부속실에는 탕비실(급·배수시설 포함)을 설치함
- ⑤ 보안관리대원이 비상사태를 초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함(집무실, 부속실)

2) 판사실 등

- ① 판사실은 1인 1실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1실의 면적은 36㎡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배치함

(예시)



- ② 판사실은 청사 맨 위층에 배치하되 복도에 보안장치(전자식 신분증 또는 지문, 안면인식기) 등으로 출입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③ 판사실과 법정으로 통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판사실 복도에서 법관의 법정출입전용복도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사의 신변보호에 용이하도록 함
- ④ 판사가 출입하는 주 출입구 또는 판사실 출입문에 보안장치 설치를 고려함
- ⑤ 판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판사실과 부속실에 비상벨 설치
- ⑥ 부속실은 통합부속실로 설치하고, 1실의 면적은 36㎡를 기준으로 2인이 1실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외부 공기에 면하여 채광을 확보하도록 배치함
- ⑦ 복사·물품실(회의실 겸용)은 재판부실이 있는 층에 1실을 설치하고, 다목적 소통공간으로 활용함

3) 사무과장실

- ① 법원장실과 같은 층으로 법원장실 인근에 49.58㎡ 규모의 별도 방실을 설치하되 부속실은 법원장 부속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함

4) 사법보좌관실

- ① 면적은 36㎡를 기준으로 하고 2인이 1실을 사용하며, 재판부실과 같은 층에 배치하고, 부속실은 판사실의 통합부속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함
- ② 총무과 분실(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함
- ③ 민원인의 사법보좌관실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장치의 설치를 고려함

5) 각 과(課)사무실

- ① 과 사무실의 경우, 민원인 출입 빈도와 과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직원 1인당 13.22㎡를 기준 면적으로 하고, 과장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되, 33㎡의 회의 공간을 부여함
- ② 총무과는 가능한 한 사무국장실과 인접하여 배치함

- ③ 총무과 분실(사건 접수, 가족관계등록) 등 민원인이 출입하는 사무실에는 적절한 규모의 민원인 공간을 배정하되, 법원 직원 사무 공간과 구별함
 - FAX·복사기·컴퓨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 ④ 총무과 분실 등 민원 관련 부서(법률상담실, 민원상담실, 은행, 우체국)는 민원인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전체에 걸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함
- ⑤ 민원대의 높이는 80~85cm로 하며,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부는 투명유리 보호막을 설치함
- ⑥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공간은 독립적인 업무처리 및 상호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도 고려하여 배치함
- ⑦ 휠체어 사용자가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 및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함
- ⑧ 법률상담실, 민원상담실(우선지원창구 겸용)은 통합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고, 인근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 등 이용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⑨ 가사과(단독, 합의)는 가능한 한 해당 재판부 판사실과 같은 층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상 같은 층에 배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최대한 가까운 층에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 고려
- ⑩ 조사관실은 1인당 9.92㎡를 기준으로 하되 증원에 대비하여 여유있게 설치함. 조사관실은 조사실이나 상담실에 근접하여 배치함

6) 법정 및 당사자대기실

가) 법정

- ① 2개 재판부당 법정 1개를 배정하는 것이 원칙임. 연면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법정을 설치함으로써 재판부당 주 2회 이상 재판이 가능하도록 함
- ② 표준법정(30평) 2개, 소법정(20평) 2개, 총 4개를 설치함
 - 법정층에는 합의실(12평)을 부속시키고, 법관이 휴정 중 직무를 볼 수 있도록

전자네트워크를 연결함

- ③ 소년법정(40평) 1개를 설치함(청소년참여법정 겸용)
 - 소년법정 내에는 청소년참여인단(최대 5~15인)이 착석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참여법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참여인단의 합의실(법관 합의실 겸용)은 법정에 부속하여 12평 내외로 설치하고, 합의실의 모습이나 소리가 외부로부터 차단되도록 시설되어야 함. 다만, 합의실 내부 촬영용인 CCTV를 위한 선로 구성
 - 법관이 법정을 거치지 않고 사법참여인 합의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와 출입문이 확보되어야 함
 - 소년법정 가까이에 위탁보호위원 및 위탁기관 직원대기실(상담실, 대기실)을 배치함
 - 소년법정 가까이에 불위탁 소년 및 보호자 대기실 겸 교육장을 배치하고 프로젝트 영상설비 등 교육시설을 설치함
 - 소년법정에 부속되는 위탁소년보호실(구치감)에는 감시실, 교도관실, 소년·소녀보호실, 검신실, 압수물품 창고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남·녀 화장실을 각 설치하며, 호송차량 출입이 가능한 곳에 배치함
 - 위탁소년·소녀 대기실은 남녀로 구분하고 화장실도 별도로 설치함
- ④ 법정 접근경로는 다음과 같이 3분하여 철저히 분리하되, 보안출입경로는 자해 등에 대비하여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
 - 법관, 법원직원을 위한 통제 출입 경로
 - 소송관계인, 증인, 방청객, 보도진 등을 위한 공중 출입 경로
 - 위탁소년과 분류심사원 직원 등의 출입을 위한 보안 출입 경로
- ⑤ 위 3개의 이동경로마다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타 구역으로부터의 교차 접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배치함
- ⑥ 자연광에 의한 조명이 가능하도록 고려하고, 기존 법정과 달리 권위주의적 모습을 벗어나 가사법정의 경우는 밝은 분위기로, 소년법정은 소년의 장래에 대하여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의 법정이 되도록 함

- ⑦ 법정은 판사실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기타 소송관계인의 동선도 편리하도록 고려함
- ⑧ 건물외부로부터 법정진행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고, 외부나 인접 법정의 소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음벽을 사용하여 벽을 마감처리 함
- ⑨ 녹음 등 설비를 위한 전기선로(참여관석),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을 위한 경보선로(법관석, 참여관석), 컴퓨터 사용을 위한 케이블선로(법관석, 참여관석, 변호인석, 검사석)의 설비에 대비함(이중 바닥 또는 와이어 덕트를 설치하여 전자법정 설치에 용이하도록 준비함)
- ⑩ 법정 내 스피커는 돌출형이 아닌 내장형으로 설치함
- ⑪ 법대는 전자법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 정보화 설비를 설치함
- ⑫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등화가 유지되도록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별도의 동력공급장치의 설치를 고려함
- ⑬ 장애인이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법정 바닥에 높은 턱이 없도록 마감하고, 휠체어 등으로 법정 내에서 이동하여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통로를 확보함
- ⑭ 법정에 근접하여 법원보안관리대 대기실을 두고 인원을 배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함
- ⑮ 바닥 마감재는 소리의 잔향이 나지 않는 재료(카펫)를 사용함
- ⑯ 법대의 높이와 폭은 인체공학적인 면과 업무의 효율성 및 당사자의 눈높이를 고려함
- ⑰ 법대와 참여석에는 중앙감시실 또는 보안관리대실과 연결된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법정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함
- ⑱ 화재에 대비하여 법정에 소화(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비를 설치함
- ⑲ 실시간 재판안내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도록 배관을 설치함(법원경위석, 법정 외부)
- ⑳ 법정 후면에 전자시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원을 설치함
- ㉑ 프로젝터를 시청할 수 있도록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함
- ㉒ 법정 외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개정등을 민원인 출입 통로에

설치하고, 법관 출입통로에는 설치를 고려함

- ②③ 법정외 재판 관련석에 마이크를 반드시 갖추고 재판진행을 PC에 자동으로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음성신호를 제공하도록 설치함
- ②④ 마이크의 헤드 부분에는 마이크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램프가 점등 되도록 하고, 형사법정에는 당사자가 서서 발언할 수 있도록 마이크 길이를 확보하도록 설치함

나) 당사자대기실

- ① 법정이 위치한 층에는 당사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당사자 대기홀을 확보
 - 당사자 대기홀에는 당사자들이 재판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재판진행상황 안내모니터를 설치
 - 당사자 대기홀은 최소 두 개 이상의 법정외 출입 가능한 곳에 배치하며, 법정 및 다른 공간과 구획 분리하여 배치

7) 서고 및 창고

- ① 각 과 사무실, 총무과 분실 별로 사무실 면적의 20~ 50% 비율로 서고를 확보함
- ② 총무과 옆에 소모품 및 비품 창고를 확보함
- ③ 영구보존서고(가족관계등록서고)등은 화재 발생 시 원형이 변형되거나 보존 기록물이 파손되지 않는 자동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함
- ④ 서고 및 창고의 적재하중은 10KN/m²로 구조설계를 함
- ⑤ 서고와 창고는 가능한 한 이동식서가(모빌렉)를 설치하여 창고의 효율성을 높임
- ⑥ 서고와 창고의 구조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존물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불필요한 구조물들을 최소한으로 설치하되, 비내력벽을 설치하여 만일의 경우 벽들의 위치를 조정하여 서고 및 창고의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함

8) 조사실 등

가) 조사(가사, 소년)실

- ① 분위기를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화분, 화초나 그림액자 등의 비품을 갖출 공간과 벽 또는 출입문 쪽에는 반투명 유리창 설치를 고려함
- ② 폭력성이 심한 당사자의 조사에 대비하여 CCTV 설치를 위한 선로를 구성함
- ③ 비상시를 대비하여, 피조사를 위한 출입문 이외에도 조사관을 위한 별도의 출입문 설치를 고려함

나) 조사[(면접)가사, 소년조사]관실

- ① 조사실 및 상담실 가까이에 설치

다) 소년화해권고실 및 대기실

- ① 소년법에 따른 화해권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실로 소년법정 가까이에 배치

라) 아동상담·심리평가실

- ① 아동(이혼, 아동보호 등)의 성격, 심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문답이나 지필검사 외에 행동관찰을 통한 검사가 필요함
- ② 두 개의 구분된 공간(상담실, 관찰실)으로 이루어져 한방에서 아동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 다른 방에서 그쪽에서만 보이는 유리창을 통하여 아동을 관찰함

마) 상근진단전문가실

- ① 소년사건 등에서 전문가(의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 법정 층에 설치함
- ② 상근진단전문가 미위촉시 상담실로 활용

9) 협의이혼의사확인실 등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실

- ① 법관과 일반인의 출입경로를 가능한 분리하고, 조정실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고려함
-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실 가까이에 유아를 대동한 부모를 위해 놀이방을 설치함

나) 협의이혼 당사자 대기실

-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실 가까이에 남녀 구분하여 배치함

다) 협의이혼 교육장

- ① 협의이혼당사자 대기실에 접하게 설치하며 프로젝터 영상설비 등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함

라) 협의이혼상담실

- ① 가능한 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실 인근에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 가까이 배치함. 상담위원실을 겸함

10) 조정실

- ① 조정실은 법정 가까이 설치함
 - 조정위원 대기실은 조정실 가까이 설치함
- ② 조정실과 조정당사자 대기실
 - 조정실은 법관과 일반인의 출입 경로를 분리함
 - 당사자 대기실은 조정실 가까이 설치하고, 원고(신청인)와 피고(피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외부와 통하는 창을 설치하고, 화초(조화), 액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테이블 등을 구비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함

11) 면접교섭실

- ① 면접교섭실은 가사조사실 가까이 배치하되,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반법정 등과 출입동선을 분리함
- ② 관찰실을 구분 설치하고, 중간 벽면에 관찰실에서만 면접교섭실을 볼 수 있는 일방경을 설치

12) 증인지원관실 등

가) 특별증인지원실

- ① 법정 층에 설치하되, 각 법정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
- ② 증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법관 동선에 설치함
- ③ 피해아동을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별도 인테리어 필요

- ④ 아늑한 인테리어와 장애인 화장실 등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화상증언실

- ① 법정 층에 설치함
- ② 증인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의 증언에 사용되도록 법정과 특별증인지원관실 사이의 화상 증언이 가능하도록 영상 시스템 설치를 위한 선로를 구성함

다) 당사자대기실(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등)

- ① 행위자·피해자대기실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급적 법원보안관리대 가까이 설치함

13) 전산실

- ① 전산실의 위치는 가능한 민원인의 출입이 없는 곳과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불가능한 장소로 선정하되, 건물의 상층에 위치시켜 수해 및 각종 비상사태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도록 함
- ② 통신회선 인입, 랜 케이블(LAN Cable) 분기, 전원선 인입, 공냉식 에어컨 개별 냉방기 설치에 따른 냉매와 드레인(Drain) 배관 연결 등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함
- ③ 화재 발생시 원형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자동가스소화설비 및 방화셔터를 설치함
- ④ 정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치 공간 확보
- ⑤ 전산기계실 내 CCTV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함
- ⑥ 바닥은 이중바닥재 35T 이상을 적용 (전산실, 통신실, EPS/TPS실, 중앙감시실, 상황실 등)
- ⑦ 전산기계실 냉방기(항온항습기)는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설치함

14) 기타 필요 부속시설

- ① 회의실
 - 소회의실(행사장 겸용) : 66㎡(20평) 규모의 1실을 법원장 집무실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함

- 중회의실 : 198㎡(60평) 규모의 1실을 설치하고, 연단의 높이는 앞좌석 착석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낮추어 설치함. 앞쪽 부분은 일반이동식 의자를 설치하고 뒤쪽 부분은 접이식 스탠드를 설치하여 운동시설, 연회장, 강당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② 도서실

- 132㎡(40평) 규모로 1실을 설치함
- 열람석, 복사실, 코트넷의 연결에 의한 자료 검색 공간 포함
- 외부 열람자들의 소지품 보관 장소 설치를 고려함
- 바닥 마감재는 소리의 잔향이 나지 않는 재료(카펫타일 등)를 사용함

③ 탕비실

- 사무실이 설치된 층마다 6.6㎡(2평) 규모의 1실씩 설치함
- 싱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④ 열람 복사기 구역, 자동발급기 구역

- 복사기 및 발급기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 장치를 설치함

⑤ 은행, 구내식당(구내매점 포함), 교환실, 숙직실 등 확보

- 식당은 음식 냄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함
- 은행, 구내식당 등 외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은 별도 분전반을 구성하고, 별도 계량기를 부착하여 월 전력사용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함

⑥ 직원 휴게실

- 간이침대, 샤워실,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확보
- 남·여 1실(26.4㎡/8평)을 설치함

⑦ 모성보호실

- 모성보호실은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 및 소파 등을 설치함

⑧ 관리원 대기실

- 보안관리대원실과 겸용으로 설치함

⑨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준수하여 설치하고 가급적 확장형을 반영하고 차선도색은 융착형을 적용
- 차량 1대당 30.75㎡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면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적절히 분배함(총 주차면수는 교통영향평가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법정주차면수의 120%이상으로 계획함)
- 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자동차를 통제하는 통합된 차단기 등의 설비를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여 법원 민원 이외의 용도로 주차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함
- 화재, 방재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하고, 대형 버스의 이동 공간을 고려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를 고려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법령(조례포함)을 고려함

⑩ 도로 및 보도

-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에 따른 한국형도로포장 설계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량,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결과 등을 반영
- 곡선부에 소방차 또는 비상차량 등 통행차량의 안전한 주행 및 회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단기가 설치시 추가적인 폭을 반영
- 보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함

⑪ 운동 공간

- 청사 내 체력단련실에는 샤워실과 일정한 여유 운동 공간(탁구대 등 실내 운동기구 설치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가능한 지상 층으로 확보함
- 테니스장 또는 운동시설을 설치하되, 여유공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정규규격에 근접하도록 설치하고, 우기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공법을 반영하며, 시설물 주변 경계 부분에는 메쉬웬스를 설치함

15) 조경

- ① 조경면적 및 식재면적은 지자체 건축조례, 지구단위계획, 조경기준(국토부고시)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 함
- ② 조경 수목의 성상별 생육 최소 토심은 수목식재(국토교통부고시)를 반영 함
- ③ 인공지반 및 지하주차장 상부구역은 배수처리시설물(자갈배수층, 수직드레인)을 반영 함
- ④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시각적 개방감을 갖도록 함
- ⑤ 치유와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경수, 조각품 등을 설치함
- ⑥ 무궁화를 반영하여 설계함

16) 면접교섭센터(별도 건물 1층)

- ① 면접교섭센터는 면접교섭실과 관찰실을 구분 설치하고 양육친·비양육친 대기실 및 상담실, 사무실, 가족화장실 등을 설치
 -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하여 40평 규모로 설치함
 - 설치(안) 예시

창문		출입문 (청사외부 연결)	양육자 대기실
창문	면접교섭실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관찰용 책상</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관찰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0 auto;">관찰용 책상</div>	복도 보안 요원 책상	사무실
창문	면접교섭실2		상담실
		출입문 (청사내부 연결)	비양육자 대기실

- ②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법원보안관리대 출동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이혼 후 또는 이혼 중에 있는 당사자(비양육자)와 자녀가 원활한 면접교섭을

하기 위해 마련된 중립적인 장소이므로, 법원 내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면접교섭 중 발생할 아동 탈취나 부모 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17) 다문화가정 법률지원실(민원상담실 내)

- ① 경상남도,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할 내 다문화가정에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한 일정 공간을 확보함(총무과 분실 인근)

18) 독신자 숙소(면접교섭센터 윗층)

- ① 면접교섭센터 윗층에 배치하되, 출입문을 별도 설치하여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과의 동선을 분리함
- ② 1인실로 설계하되,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여 공간활용이 용이하도록 함
- ③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게 설계하고, 방진, 방음 등 수치를 법정 규정에 맞게 준수하도록 함
- ④ 독신자 숙소 옥상에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함
- ⑤ 자연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함
- ⑥ 단열 성능을 확보하고, 누수 및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⑦ 보안을 위한 CCTV, 화재감지시스템 등을 설치함
- ⑧ 본관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함

다. 청사 규모 내역

1) 청사규모 : 청사 7,620.98㎡ + 별관 629.02㎡ → 8,250㎡(2,495평)

2) 청사 → 7,620.98㎡(2305.34평)

실명		산출규모				비고	
		1실면적	실수	면적(㎡)	면적(평)		
법 원 장 실 및 판 사 실	법원장실	99.17	1	99.17	30.00	집무실 72.72㎡, 접견실 26.45㎡, 사실포함	
	부속실	26.45	1	26.45	8.00	탕비실 포함	
	행사실	66.12	1	66.12	20.00	소회의실 겸 행사실	
	판사실	36.00	5	180.00	54.45	36㎡ × 5실	
	판사실(예비)	36.00	2	72.00	21.78	36㎡×2, 증원대비 예비실 2실 확보	
	통합부속실	36.00	1	36.00	10.89	1실 2인 사용	
	복사·물품실 (판사회의를실 겸용)	36.00	1	36.00	10.89	판사회의를실 설치(복사기, 비품 비치)	
	소 계			515.74	156.01		
일 반 사 무 실 및 창 고	사무국장실	49.58	1	49.58	15.00	부속실은 법원장 부속실 공동 사용	
	사법보좌관실	36.00	1	36.00	10.89	1실 2인(예비 1명), 통합부속실 공동사용	
	총무과	사무실	178.42	1	178.42	53.97	11명×13.22㎡+33㎡(회의공간)
		서고	66.00	1	66.00	19.97	
		창고	66.00	1	66.00	19.97	
	가사과	사무실	264.46	1	264.46	80.00	17명×13.22㎡+19.86㎡(회의공간)+19.86㎡(열람공간)
		서고	66.12	1	66.12	20.00	사무실 면적의 25%
	민원상담실	19.83	3	59.49	18.00	법률상담실 19.83㎡ + 민원상담실(우선 지원창구) 19.83㎡ +, 다문화가정법률지원실 19.83㎡	
	총무과 분실 (가족 관계, 접수)	사무실	191.73	1	191.73	58.00	8명×13.22㎡+19.86㎡(회의공간)+민원인 홀 39.6㎡
		서고	99.17	1	99.17	30.00	사무실 면적의 60%(보존기간 고려)
	가사소년기록창고	82.65	1	82.65	25.00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모두 종이기록 임을 감안	
	조사관실	62.80	1	62.80	19.00	5인×9.92㎡+13.2㎡(회의공간)	
	소 계			1222.42	369.78		

실명	산출규모				비고
	1실면적	실수	면적(㎡)	면적(평)	
가사표준법정	99.17	2	198.34	60.00	
가사소법정	66.12	2	132.24	40.00	
소년법정	132.23	1	132.23	40.00	청소년참여법정 겸용, 청소년참여인단석 설치
합의실	39.66	1	39.66	12.00	법정층에 배치, 청소년참여인단 합의실 겸용, 소년법정과 연결통로 확보
특별증인지원실	33.06	1	33.06	10.00	법정층에 배치, 아동을 위한 별도공간 확보, 법관 동선에 설치
화상증언실	19.83	1	19.83	6.00	특별증인지원실 가까이 배치
위탁소년 대기실	26.45	1	26.45	8.00	소년법정 가까이 배치, 화장실 포함
위탁소녀 대기실	16.53	1	16.53	5.00	소년법정 가까이 배치, 화장실 포함
불위탁소년 및 보호자 대기실겸교육장	66.12	1	66.12	20.00	30석 규모, 소년법정 가까이 배치
위탁보호위원 및 위탁기관 직원대기실	33.06	1	33.06	10.00	소년법정 가까이 배치 상담실 19.84㎡, 대기실 13.22㎡
위탁소년보호실 (구치감)	198.35	1	198.35	60.00	소년보호실39.67㎡, 소녀보호실33.06㎡, 남여화장실 구분, 사무실 및 감시실 33.06㎡, 검신실 26.45㎡, 압수물품 창고 13.22㎡ 등으로 적절히 구성, 민원공간과 분리 필요
진단전문가실	13.22	1	13.22	4.00	법정층에 배치
화해권고실 및 대기실	36.36	1	36.36	11.00	소년법정 가까이 배치
협의이혼 당사자 대기실 겸교육장	66.12	1	66.12	20.00	40석 규모 협의이혼확인실에 가까이 배치
협의이혼의사 확인실	26.45	1	26.45	8.00	
협의이혼 상담실	19.83	1	19.83	6.00	협의이혼의사확인실에 가까이 배치
조사(가사, 소년조사)실	23.14	5	115.70	35.00	유아 대동 피조사자를 위한 유아용 침대배치
면접교섭실	46.28	1	46.28	14.00	가사조사실 가까이 배치, 면접교섭실 29.75㎡ +관찰실 16.53㎡
조정실	33.06	3	99.18	30.00	법정층에 가까이 배치
조정위원실	26.45	1	26.45	8.00	조정실 가까이 배치

재판업무관련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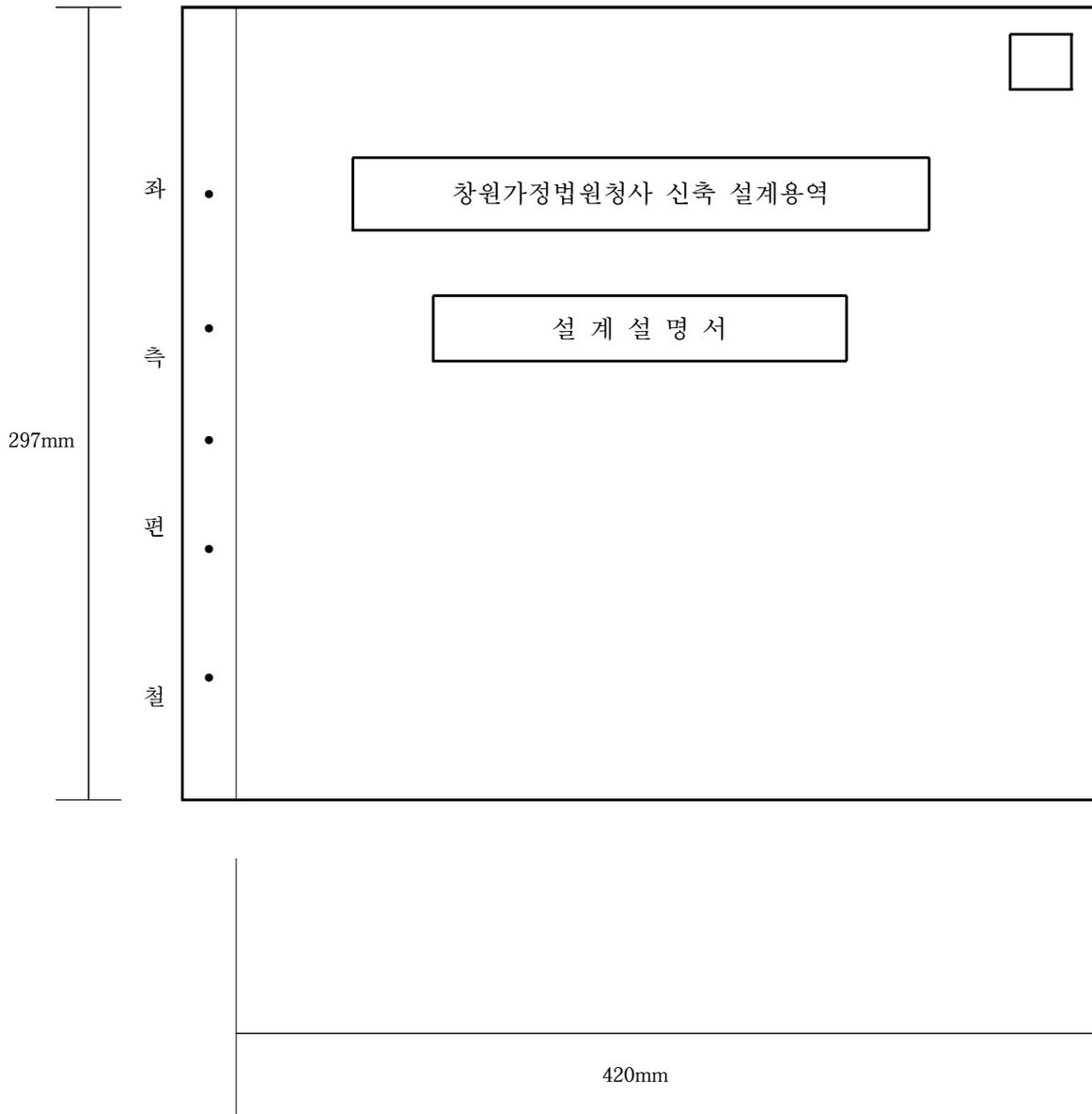
실명		산출규모				비고
		1실면적	실수	면적(㎡)	면적(평)	
	조정당사자 대기실	26.45	2	52.90	16.00	조정실에 가까이 배치, 원,피고용 각1실
	당사자대기실(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	16.53	2	33.06	10.00	보안관리대에 가까이 배치, 행위자·피해자 각 1실
	아동상담 심리평가실	33.06	1	33.06	10.00	상담실 및 관찰실, 조사관실 가까이 배치
	소 계			1464.47	443.00	
회의실	중회의실	198.35	1	198.35	60.00	50석규모, 영사시설포함, 이동식 회의탁자 설치
	소 계			198.35	60.00	
도서실	도서실	132.23	1	132.23	40.00	
	소 계			132.23	40.00	
전산실	전산실	66.12	1	66.12	20.00	전산기계실 포함
	소 계			66.12	20.00	
보안 및 관련 시설	당직실	49.58	1	49.58	15.00	사무실, 숙직실, 샤워시설 적절히 배치, 숙직실과 샤워실은 남녀 구분
	사회복무요원 환복실	13.22	1	13.22	4.00	
	보안관리대원실	39.66	1	39.66	12.00	2명×13.22㎡ + 회의공간 13.22㎡, 관리원대기실 겸용
	청사보안실	39.66	1	39.66	12.00	2명×13.22㎡ + 회의공간 13.22㎡, 정문
	소 계			142.12	43.00	
청사 관리 관련 시설	통신실	23.14	1	23.14	7.00	전산실에 붙여서 배치, 통신장비실
	공무직사무실	23.14	2	46.28	14.00	
	용역비품창고	33.06	1	33.06	10.00	청소비품창고는 각종 화장실 내 별도설치
	기계실	520.00	1	520.00	157.30	방재센터, 기계, 전기, 발전, 공조 등
	소 계			622.48	188.30	
후생 및 복	우체국	33.06	1	33.06	10.00	
	은행	33.06	1	33.06	10.00	
	체력단련실	132.23	1	132.23	40.00	남, 여 탈의실 및 샤워실 구분, 지상층에 설치

실명		산출규모				비고
		1실면적	실수	면적(㎡)	면적(평)	
리 시 설	식당	165.29	1	165.29	50.00	일반식당 132.23㎡ + 별실 33.06㎡ 구분 설치
	주방	49.58	1	49.58	15.00	영양사실 및 창고 포함
	직원휴게실	26.45	2	52.90	16.00	남, 여 각 1개실
	모성보호실	26.45	1	26.45	8.00	수유실 포함
	탕비실	6.61	4	26.44	8.00	층마다 설치
	동호회실	33.06	1	33.06	10.00	
	예비실	52.89	1	52.89	16.00	
	소 계			604.95	183.00	
주 차 시 설	지하주차장	30.75	11	338.25	102.32	
	소 계			338.25	102.32	
합계				5307.13	1605.40	
공용면적				2313.85	699.94	전용면적의 43.59%
합 계				7620.98	2305.34	

3) 면접교섭센터 및 독신자 숙소 → 629.02㎡(190.28평)

실명		산출규모				비고
		1실면적	실수	면적(㎡)	면적(평)	
면접교섭센터		40.00	1	132.23	40.00	면접교섭실 23.145㎡×2실, 관찰실 9.90㎡, 양육친·비양육친대기실 각18.19㎡, 사무실 19.83㎡, 상담실 19.83㎡,
독신자숙소		23.14	12	277.68	84.00	
창고 및 기계실		39.66	1	39.66	12.00	
전용면적합계				449.58	136.00	
공용면적				179.44	54.28	전용면적의 39.91%
합 계				629.02	190.28	

(별지 1)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 (주) 1) 표지 글자체는 흑색 활자체로 할 것.
2) 제출 도면 전면, 후면 모두 고유번호 표기 없음.
3) 우측 상단의 공란의 네모박스는 각 60mm 박스 형태로 우측과 상측 끝에서 20mm 띄우고 위치토록 함.
4) 다음 페이지의 양식을 따를 것

창원가정법원청사 신축 설계용역

설 계 설 명 서

(별지 2) 실별 면적표 양식

[예시]

○ 지침면적 대비표

실 명		지침 면적			설계 면적			증 감	비 고
		1실면적	실수	면적	1실면적	실수	면적		
지원장실 및 판사실	지원장실	99.17	1	99.17	100	1	100	0.83	
	접견실	26.40	1	26.40	26.40	1	26.40	0	
	부속실	26.40	1	26.40	25.60	1	25.60	-0.8	
	...								
	소 계								
일사무실 반 및 고 창	사무국장실	59.50	1	59.50	60.40	1	60.40	0.9	
	사법보좌관실	59.40	1	59.40	58.40	1	58.40	-1.0	
	부속실	19.80	1	19.80	20	1	20	0.2	
	...								
	소 계			0					
합 계				14,170.60			14,104.24	-66.36	
로비, 화장실, 복도, 계단 등				5,664.64			5,641.70	-22.94	
연건평 총계				19,835.24			19,745.94	-89.30	

○ 층별 면적표

층 별	실 명	설계 면적			비 고
		1실면적	실 수	면 적	
1층	종합민원실	283.80	1	281.56	
	은행	66.12	1	68.50	
	소 계				
2층	식당	198.00	1	200.00	
	도서실	198.00	1	193.65	
	소 계				
합 계				14,104.24	
로비, 화장실, 복도, 계단 등				5,641.70	
연건평 총계				19,745.94	

※ 각 실별 면적의 허용오차 ±5% 범위

○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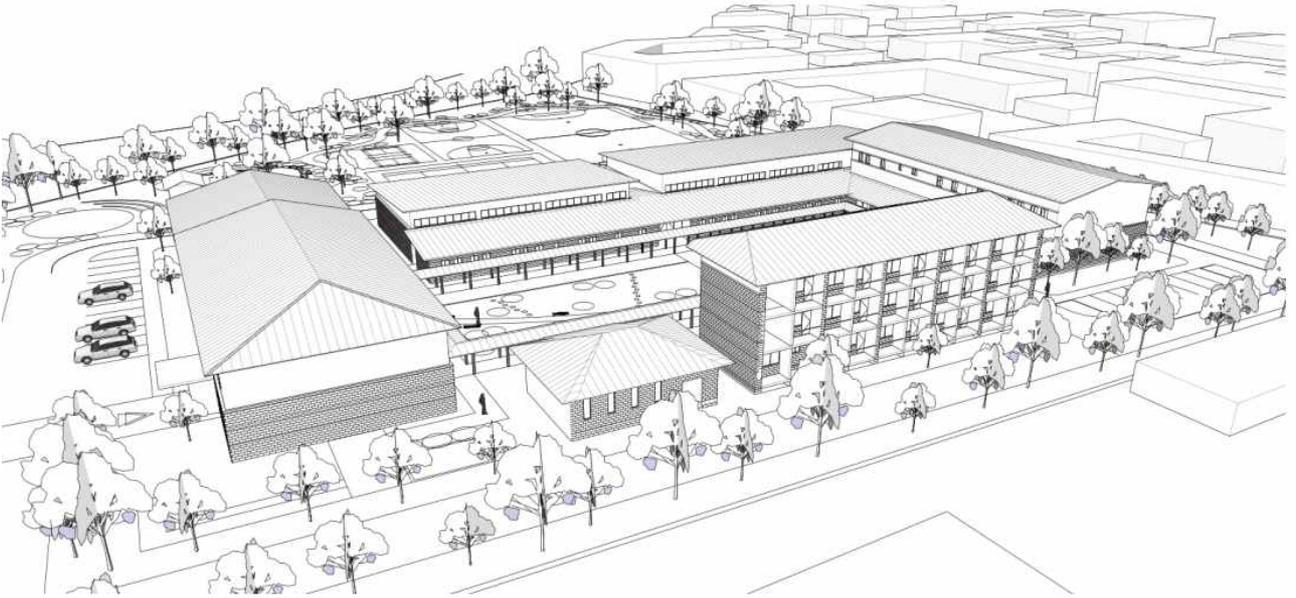
구	분	설계내역	비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m ²	
	지역지구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구조		
	층수	층	
	최고높이	m	
	건폐율		
	용적율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기타 시설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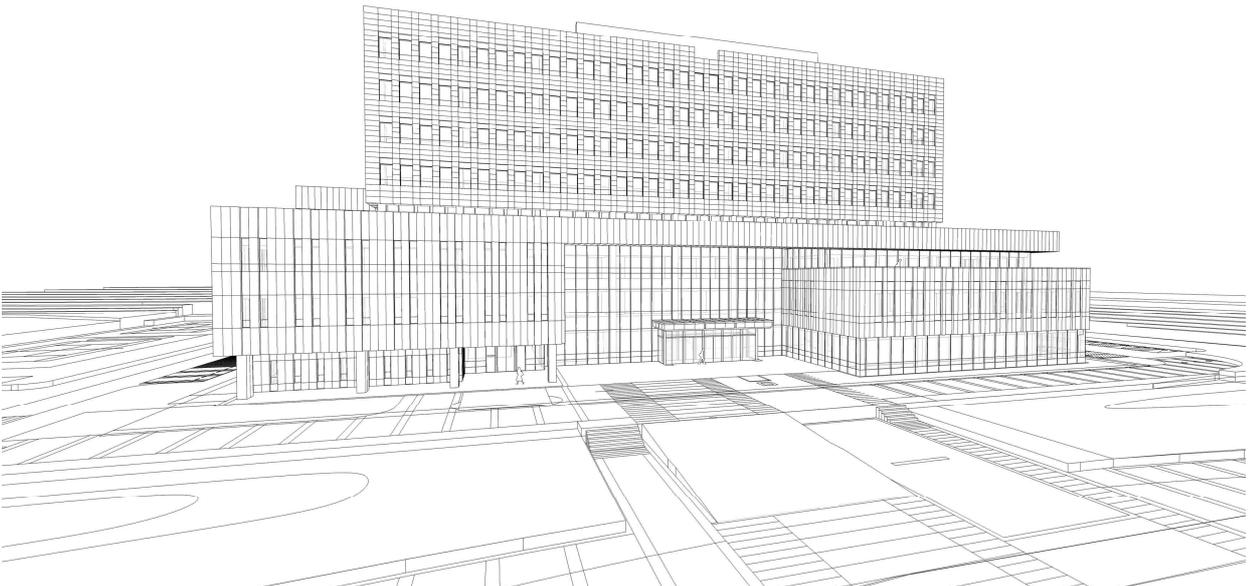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별지 3)

허용 예시-1



허용 예시-2



※ 디자인 컨셉과는 전혀 상관 없으니 허용가능 여부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4)

불가 예시-1



불가 예시-2



※ 디자인 컨셉과는 전혀 상관 없으니 허용가능 여부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6) 공동응모 협정서 양식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창원가정법원청사 신축 설계용역" 일반설계공모를 ()과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3조(공동참여응모시의 참여업체 및 참여비율) 공동참여응모에 참여하는 업체 및 업체별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 (인)
2. 업체명 : () (인)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계경기 관리자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1.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대 표 건 축 사 선 임 계

본인은 대표건축사사무소인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응모자로서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창원가정법원청사** 일반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의 공동응모 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1. . .

대표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인)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

대표건축사 성명 : (인)

※ 첨부서류 :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에 한함) 1부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별지 9) 일반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양식

일반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표자 (건축사)	(인)	신청 접수번호	
설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FAX번호	
지침서 (Page)	질의내용		
	<p>* FAX(02-533-7292)으로 전송할 경우 전송 후 반드시 전화 (02-3480-1967) 담당자 (양성인 건축실무관)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11) 응모확인서 양식

응 모 확 인 서

성 명 :

상 호 :

전화번호 :

소재지 :

고유번호 : -

(별지 12) 현상공모 응모확인 봉투 양식

**창원가정법원청사 신축 설계용역
일반설계공모 응모 확인 봉투**

※ 소정의 응모확인서를 이중봉투에 넣고 봉하여 응모도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가정법원청사 신축 설계용역
일반설계공모 응모 확인 봉투**

※ 소정의 응모확인서를 이중봉투에 넣고 봉하여 응모도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가정법원청사 신축 설계용역
일반설계공모 응모 확인 봉투**

※ 소정의 응모확인서를 이중봉투에 넣고 봉하여 응모도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가정법원청사 신축 설계용역
일반설계공모 응모 확인 봉투**

※ 소정의 응모확인서를 이중봉투에 넣고 봉하여 응모도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3) 관련 법규 검토서 양식

관련 법규 검토서

법규명 및 조항	대 상	법적 기준	실제 기준	비 고

(별지 15) 기피신청서 양식

기 피 신 청 서

OOO건축사사무소는 창원가정법원청사 신축 일반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OOO위원이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기피하고자 하오니 법원행정처에서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서류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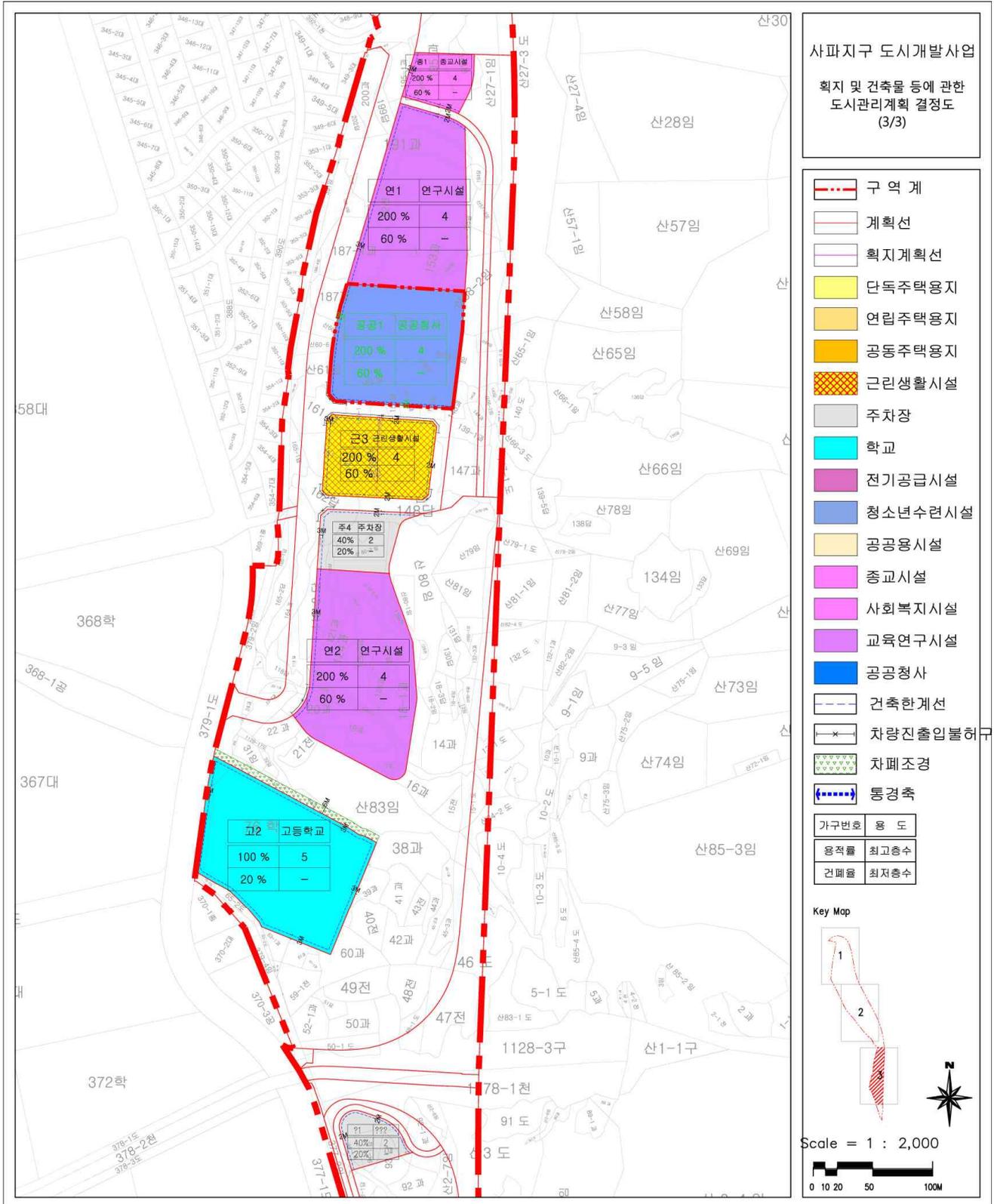
2021. .

OOO건축사사무소 : (서명)

법원행정처장 귀하

※ 기피신청서는 반드시 6월 18일 17:00 이전에 접수하여야 함

(별지 16) 부지관련자료



(별지 16) 부지관련자료 확대도면

